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호경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반면 사고 피해자는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이 어려워 사고 후 대응과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교육과 법률·심리 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안 제4조)

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실태조사(안 제5조)

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안 제6조)

바. 위탁 및 협약체결·협력(안 제7조, 안 제8조)

5. 검토내용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 적합성

-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내용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 및 피해 예방 등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신고는 총 793건으로, 매년 약 30건의 사고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신고되고 있음.¹⁾
- 충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현행법상 입증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사고 피해자인 소비자 측에 있기 때문에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본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교통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미루어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주요 내용 검토

- 타 시도의 경우, 유사 조례 제명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으로 제시한 반면, 우리도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로

1) "자동차 급발진 연평균 30건씩 신고 들어오는데", 뉴시스(2024. 7. 7.)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 법 본회의 통과", 국제뉴스(2024. 11. 15.)

표현함²⁾. 향후 자동차 구조가 복잡해지고, 전자장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차량 안전 기술 발전, 데이터 분석 기술 향상(블랙박스, EDR 등), 자동차 제조사 테스트 검증 강화 등으로 인해 실제 급발진 사고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비’라는 용어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수식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6조	피해자 지원(법률상담, 심리상담)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7조	위탁
제4조	교육(발생과정, 운전 요령, 대처방안)	제8조	협약체결 및 협력

○ 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과정, 운전 요령 및 대처 방안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

2) ‘대비’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 ‘예방’은 재해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로 정의됨. [표준국어대사전]

- 안 제5조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안 제4조 ~ 제6조의 교육,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차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사고 이전 예방을 위한 내용(안 제4조, 안 제5조)과 사고 발생 이후 피해 지원을 위한 조항(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으로 구성되어 있어 균형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의 절차적·기술적 사항

- 조례안 예고('25. 3. 6. ~ '25. 3. 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 그밖에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조문의 표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의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한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교육,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의 요구가 높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충북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